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에 관한 연구

–보험자 등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의 전가 문제와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과 법무보험 및
부동산 권원보험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Finance for Costs of Legal Action

– Focusing on the Assignment of Risks to the Imperfe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ed by Insurers and the Comparison
with Legal Insurance or Title Insurance that Guarantees Legal
Costs as well as Legal Finance –

권 효 상*

Kwon, Hyo Sang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운용 상 차이점 |
| II. 보험자 또는 금융 제공자가 사용하는 인
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 및 소송 금융과 부동산 권원보험의 보장
범위 상 차이점 |
| III.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위험의 이전 방식 | V.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운용 상 제문제
및 개선 방안 |
| | VI. 결론 |

<https://doi.org/10.35148/ilsilr.2024..57.35>

투고일: 2024. 3. 22. / 심사완료일: 2024. 4. 18. / 게재확정일: 2024. 4. 21.

* 고려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보험중개사

Ph.D., Insurance Broker, Lecturer, Korea University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송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민의 대부분인 중산층 가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는 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송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하여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는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법무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소송 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법무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 보험사가 철수하였고, 국내 보험사는 교통사고 사건이나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 사건 등의 특정 분야의 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 대다수는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소송 금융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최근 이러한 소송 비용을 금융업자가 제공해주는 상품이 출현하였고,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소송 금융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社は 소송 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 중 하나인데, 2009년 설립된 이후에,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의 8개 사무실에 160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社は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상업 법률 금융 기관으로, 수백 개의 대형 로펌(law firms)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社は 또 다른 소송 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로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소송 금융을 제공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社가 그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소송금융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여 국민이 권리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리 회사의 형태로서 운용하는 방식을 우리 법체계에서도 도입하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리 회사의 영업 행위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송금융, 법률비용, 법무비용, 인공지능, 승소율, 법무보험

I. 머리말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를 배출하는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하여 정당한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¹⁾ 특히 소송구조나 법률구조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자금이 풍부하지도 않은 대부분의 중간소득층은 비용 부담의 중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는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소송 비용을 금융업자가 제공해 주는 상품이 출현하였고,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소송금융²⁾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소송금융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소송금융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위험(Risk)을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금융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전하는데,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가 소송 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인 법무보험³⁾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소송금융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위험을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전할 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승소율을 예측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인데, 이에 관하여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
- 1) 부당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특히 소송절차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 2) “소송금융”이란 소송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 받은 후에, 소송 당사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 받은 자금을 반납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업자가 제공해 주는 상품을 “소송금융”이라고 한다.
 - 3) “법무보험”이란 피보험자인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존재하고 무모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상법 상 보험의 종류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손해보험이다. 권리보호보험, 법률서비스보험, 법률비용보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법무보험’이라 한다. ‘법무보험’에 관한 상세한 연구 논문으로서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II. 보험자 또는 금융 제공자가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1. 범무보험자가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산출한 확률에 따라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한다.⁴⁾ 즉, 보험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험에 대한 평가, 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 등과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출현은 전통적 방식의 통계 기법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보험을 인수할 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②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인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Manulife⁵⁾ 및 미국의 Allstate⁶⁾와 같은 대형 보험사와 그 외의 소규모회사인 Lemonade⁷⁾가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인 Cape Analytics⁸⁾와 Lapetus⁹⁾를 들 수 있다.¹⁰⁾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초에 보험자가 예상했던 손해율 등의 결과¹¹⁾ 보다 과다한 손해율 등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위험(Risk)을 누가 부담할지 또는 그러한 손해(Loss)에 대한 법적

-
- 4)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에 상서는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1쪽 이하.
 - 5) Manulife, 2024, <<https://www.manulife.com>>, 검색일: 2024. 2. 23.; Algorithm-X Lab, KC Cheung, “First Canadian Life Insurer to Underwrite Using AI”, <<https://algorithmxlab.com/blog/first-canadian-life-insurer-to-underwrite-using-artificial-intelligence-2/>>, 검색일: 2024. 2. 24.
 - 6) Allstate, 2024, <<https://www.allstate.com>>, 검색일: 2024. 2. 23.
 - 7) Lemonade, 2024, <<https://www.lemonade.com>>, 검색일: 2024. 2. 23.
 - 8) Cape Analytics, 2024, <<https://capeanalytics.com>>, 검색일: 2024. 2. 23.
 - 9) Lapetus, 2024, <<https://lapetussolutions.com/insurance-reinsurance>>, 검색일: 2024. 2. 23.
 - 10) 안수현,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1-05, 보험연구원, 2021, 10-11쪽.
 - 11) 예를 들어, 손해율 이외에도 사업비율이나 이율 등.

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즉, 보험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적정한 보험 가격의 산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예측에 따라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손해율 등의 결과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험자가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보험자가 당초에 예측한 손해율 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손해율 등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할 때 보다 정확하게 그 위험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고도로 활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소송 위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여 보험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소송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측에 따라 당초에 예상했던 손해율 보다 과다하게 손해율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불이행 등과 같은 면책 사유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오히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인수를 거절(회피)하거나 ‘손실’ 또는 ‘손해(Loss)’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위험의 평가와 인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이 불완전하므로 당초 예상하였던 바와 달리 과다한 손해율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에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항 또는 법적인 책임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송금융 제공자가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소송금융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소송 사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고 패소 시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위험(Risk)을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이른바 소송금융이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소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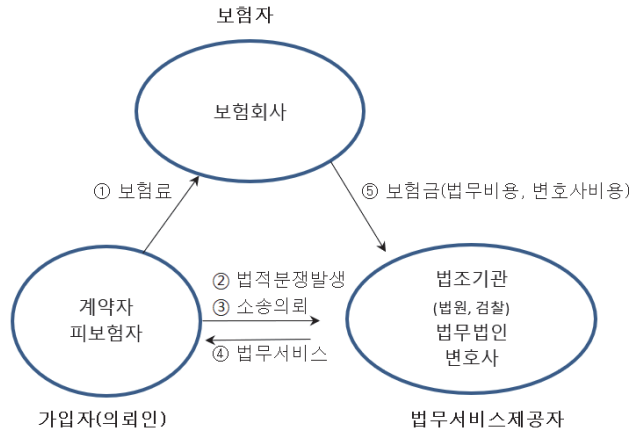
필요한 소송 당사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금용을 제공하는 자가 소송 비용을 제공하고 소송 당사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패소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이미 제공한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반환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소송 비용을 제공받은 자가 승소하였으나 회수하는데 실패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송금융 방식은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의 부담을 당해 소송 사건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소송금용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전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소송금용을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에 막대한 투자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소송금용을 제공하는 자가 승소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금용의 제공자가 제공한 지원금을 소송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금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금용을 제공하는 자와 소송 당사자는 약정을 통하여, 예를 들어, 승소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금용을 제공한 자는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 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금액을 취득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약정에 따라 추가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과 소송금용은 차이가 있다. 한편,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제공한 자가 소송 당사자로부터 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므로 앞서 설명한 법무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유사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¹²⁾ 그렇다면 다음에서 보험의 방식과 소송 금융의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12) 변호사비용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테라(アテラ)는 일본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테라, 2024, <<https://www.legal-security.jp>>, 검색일: 2024. 2. 23.

III.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위험의 이전 방식

1. 소송 비용에 대하여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



〈그림 III-1〉 법무보험의 개념도

법무보험이란 피보험자인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¹³⁾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존재하고 무모하지 않고¹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비용¹⁵⁾을 보험회사가 부담¹⁶⁾하기로 하는 상법 상 보험의 종류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손해보험이다.¹⁷⁾ 우리나라

13) 피보험자의 권리(權利)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이익이며, 이러한 권리에는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을 모두 포함한다.

14) ARB 75에서의 무모함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판례는 20DM의 교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Geldbuße)가 부과된 데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1,300DM이 소요되는 것은 과태료와 비용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성립한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권효상, 앞의 논문, 8쪽.

15) 예를 들어, 법원비용과 변호사비용.

16) 일종의 보호의무(Fürsorgepflicht)를 부담하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비용보험이 아니다.

17) ROLAND Rechtsschutz-Versicherungs-AG에 따르면, 동 회사(會社)는 보험계약자가 동 회사(會社)의 법무보험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공시하고 있다. 즉, 성별, 나이, 인종에 관계 없이 빠르고 간단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전화상담을 통하여 즉시 지원하거나, 조정이나 기타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소송절차에 접어들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Wir freuen uns, dass Sie sich für eine Rechtsschutz-Versicherung

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¹⁸⁾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소송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평등하게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유럽 등의 보험 선진국에서는 법무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가 법무 보험을 판매하였으나, 그 외국 보험사는 지난 2021년 법인을 해산하고 철수하였다.²⁰⁾

bei uns entschieden haben. Wir bei ROLAND stehen für ein besseres Miteinander. Dazu gehört für uns eine nachhaltige, chancengleiche und faire Konfliktlösung – unabhängig von Geschlecht, Alter oder Herkunft. Bei uns bekommen Sie jederzeit schnelle, unkomplizierte und nachhaltige Hilfe: Soforthilfe am Telefon, Mediation, weitere außergerichtliche Konfliktbeilegungs-Verfahren, auf Ihr Anliegen spezialisierte Rechtsanwält:innen. Ein rechtlicher Konflikt muss nicht immer vor Gericht enden. Viele Fälle lassen sich auch auf andere Weise klären. 이에 관하여 상세는 ROLAND Rechtsschutz-Versicherungs-AG, “Informationen für Verbraucher:innen und Geschäftskunden zu den Rechtsschutz-Bedingungen ARB 2024”, <https://www.roland-rechtsschutz.de/media/roland-rechtsschutz/pdf-rr/033-rechtsschutzbedingungen/arb_2024.pdf>, 검색일: 2024. 2. 24.

- 18)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제3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101조 제1항 제2문, 제10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에서 법앞의 평등이란 형식적 법적 평등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적 평등도 보장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기본법 위반이 된다는 주장은 실질적 평등을 논거로 하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동법 제19조 제4항은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에 사법제도 이용 상의 장애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현행 소송 비용 규정이 엄격함으로 해서 소송제도의 이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제도 상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동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재판권의 행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하게 법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며, 법원에서의 권리보호를 추구할 수 있는데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본다. 동법 제103조 제1항의 법정에서의 청문권은 “일단 개시된 소송 내에서 타당한 절차 상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법제도 이용 상의 장애의 존재가 다른 권리를 뛰어 넘어 직접 본 조항이 정하고 있는 법정에서의 청문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소송 비용부담에 관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이 있지만, 헌법위반은 아니므로, 이와는 별도로 소송 비용이 사법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최대 요인이고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의견이 있다. “어떤 제도든지 그 나름의 비용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소 방지라는 경제적 기능을 소송 비용 규정이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비용으로 인한 장애제거를 위한 타결책으로서의 조화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보호보험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일반인의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권효상, 앞의 논문, 9쪽;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 C.F. Müller, 1993, S. 176 ff; 콘라트헷세, 계획열 옮김, 통일독일헌법원론 제20판, 박영사, 2001, 502, 507, 528쪽.

19) 권효상, 앞의 논문, 10쪽.

20)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는 등 소송 비용이

2. 소송 비용에 대하여 소송금융으로 위험을 전가

2.1 현황

소송금융이란 소송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 받은 후에, 소송 당사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 받은 자금을 반납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²¹⁾ 즉, 소송 당사자가 소송 비용에 대한 위험을 금융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소송금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로앤굿의 사례²²⁾를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로앤굿은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로서 의뢰인이 소송을 할 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에 따라 승소가능성, 예상 재판 기간, 사건 규모, 소송 상대방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의뢰인(변호사비용 지원 대상자)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지와 로앤굿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승소 시 상황 금액 및 상세 조건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승소금의 일부(약정금)를 로앤굿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²³⁾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10월 구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이 처음으로 판매했고 독일 다스법률비용보험은 동년 12월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독일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주주총회에서 영업 폐지와 회사 해산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해산결의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8월 25일 정례회의에서 ‘다스법률비용보험의 해산결의 인가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유희근, “독일 법률비용보험사, ‘아시아 최초’ 한국 진출 12년 만에 철수”, 2021. 11. 10,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1101641011#c2b>>, 검색일: 2024. 2. 24.

- 21) 변호사비용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테라(アテラ)는 고객과 보상 계약(고객이 패소할 경우, 또는 승소·화해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아테라(アテラ)로부터 「아테라(アテラ)가 제공한 금액’과 ‘회수 실패 리스크에 대한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아테라(アテラ)가 그러한 계약으로 결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초기 비용인 착수금을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이 돈이 없더라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아테라, 2024, <<https://www.legal-security.jp>>, 검색일: 2024. 2. 23.
- 22) 로앤굿은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변호사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한 후에, 소송 당사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과 회수 방식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 23) 의뢰인(변호사비용 지원 대상자)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지와 로앤굿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변호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승소 시 상황 금액 및 상세 조건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승소금의 일부(약정금)를 로앤굿에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용 가능하고, 소송의 진행 절차 중에도 가능하고 모든 심급 사건이 해당되며, 변호사비용의 지원 금액의 상한은 없다.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소송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 즉, 이른바 소송 금융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급받고 승소하면 반납하는 금융상품이 종전에는 없었다. 로앤굿은 2023년부터 이와 같은 소송 비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32건을 집행하였는데,²⁴⁾ 32건 중 7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고, 항소가 제기된 1건을 제외하고 6건²⁵⁾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2건은 지원금을 회수하였다.²⁶⁾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은 평균 890만 원이며, 상간(相姦) 사건과 관련한 소송²⁷⁾에서 승소할 때에 받는 대가는 지원금의 50~100% 수준이다. 엘박스²⁸⁾는 2024년 중에 소송금융을 도입할 예정으로 보도²⁹⁾되고 있는데, 엘박스는 현재 의뢰인이 보고 있는 판례와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 24)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서, 어머니께서 사망하기 전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였으나, 상속 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는데, 장남인 원고는 망인의 생존 시에 부양을 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여으므로 이를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례.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 25) 위자료청구소송 2건, 양육비청구소송 1건,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1건, 권리금청구소송 1건; 예를 들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서, 임차인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을 포함한 계약을 맺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B씨가 신규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아 계약을 못 하게 되었는데, 이에 임차인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나 소송 진행을 주저하던 사례.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 26) 로앤굿을 통해 소송 금융 지원을 받은 사건을 진행한 황수호 변호사는 “가정주부가 이혼을 원해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가 있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착수금이 없어 고민하다, 소송금융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돈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송금융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홍수정, “‘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85>>, 검색일: 2024. 2. 23; 과거 우리나라에서 법무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던 독일 다스(D.A.S)사의 법무보험 상품은 이혼 또는 민법·친족법과 관련된 법적 다툼 등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상세는 권효상, 앞의 논문 참조.
- 27) 예를 들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으로서, 12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현재 소득이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 8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2억 원 상당의 토지를 공공소유하고 있지만, 경제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착수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기 못했던 사례.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 28) 엘박스, 2024, <<https://lbox.kr/v2>>, 검색일: 2024. 2. 23.
- 29) 이진 엘박스 대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법률보험도 사실 상 전무한 한국 법조계에서 소송금융은 정의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홍수정, “‘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2024. 2. 23,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한 판례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천하여 리서치 시간을 60%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닥³⁰⁾은 인공지능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승소사례 또는 판례를 선별하고 분석하여 사건 내용의 유사도와 승소사례 등의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고객이 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로스닥과 연계된 29개 금융사가 소송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인에게 각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즉, 의뢰인이 의뢰한 사건의 승소율을 계산해 대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³¹⁾

2.2 해외 사례

외국의 경우에 소송 비용을 제공하는 소송 금융회사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소송 금융회사에는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³²⁾ 오거스타 벤처스(Augusta Ventyres),³³⁾ 옴니브리지웨이(OmniBridgeway),³⁴⁾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³⁵⁾ 아테라(アテラ)³⁶⁾

<<https://www.lawtimes.co.kr/news/196085>>, 검색일: 2024. 2. 23.

30) 로스닥, 2024, <<https://lawsdaq.com>>, 검색일: 2024. 2. 23.

31) 법률신문, 홍수정, “‘소송금융’ 본격화, 법조 새 시장 열리나”,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74>>, 검색일: 2024. 2. 23.

32)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社は 소송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 중 하나인데, 2009년 설립된 이후에,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의 8개 사무실에 160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社は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상업 법률 금융 기관으로, 수백 개의 대형 로펌(law firms)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버포드 캐피탈, 2024, <<https://www.burfordcapital.com>>, 검색일: 2024. 2. 23.; 크리스토퍼 보가트 버포드 CEO는 2023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장을 평등하게 만든다”며 “그것이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률신문, 홍수정, “‘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85>>, 검색일: 2024.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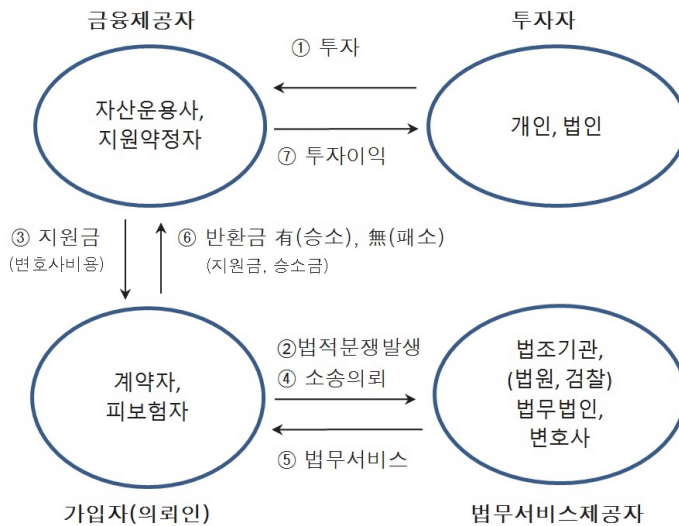
33) 오거스타 벤처스, 2024, <<https://www.augustaventures.com>>, 검색일: 2024. 2. 23.

34) 옴니브리지웨이, 2024, <<https://omnibridgeway.com>>, 검색일: 2024. 2. 23.

35)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社は 또다른 소송 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로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소송 금융을 제공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社가 그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 하버 소송 펀딩, 2024, <<https://www.harbourlitigationfunding.com>>, 검색일: 2024. 2. 23.

36) 일본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테라, 2024, <<https://www.legal-security.jp>>, 검색일: 2024. 2. 23.

등이 있다.³⁷⁾ 이러한 소송금융은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게 하여 주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회사(law firms)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며, 소송 당사자에게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송금융 분야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 분야, 국제중재 분야, 회생·파산 등의 분야에서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소송 비용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소송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소송금융을 제공한 자가 소송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매수하여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다.³⁸⁾



〈그림 III-2〉 소송 금융의 개념도

37) 영미권에서는 20년 전부터 다양한 소송금융 서비스가 나타났고, 미국 100대 로펌(law firms) 중 94%가 소송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소송금융 서비스는 기업 사건과 집단 소송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아테라(アテラ)”라는 소송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다수의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 검색일: 2024. 2. 23.

38) 법률신문, 홍수정, “‘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85>>, 검색일: 2024. 2. 23.; 법률신문, 홍수정, “‘소송금융’ 본격화, 법조 새 시장 열리나”,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74>>, 검색일: 2024. 2. 23.

IV.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운용 상 차이점 및 소송 금융과 부동산 권원보험의 보장 범위 상 차이점

1. 법무보험과 소송금융의 운용 상 차이점

1.1 법무보험

‘법무보험’은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법 제4편에서 보험 계약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보험계약법을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상법이라는 실정법에서 법무보험계약을 개별 보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법무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상법과 법무보험 약관으로 해결하게 되므로, 약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사에서 법무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별 보험 종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로 약관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 상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예측이 잘못되어 당초 예상한 손해를 보다 과다한 손해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한 결과의 귀책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미리 면책 사유를 정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보험자가 보험을 모집할 때에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설명의무의 내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 배경과 그 한계³⁹⁾ 및 이용 시 전제조건, 면책 사유와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 소송금융

소송금융은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상품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39)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관하여 상세는 최병규, “인공지능(AI) 활용 리스크에 대한 보험법의 대응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120쪽.

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법무보험과 서로 차이가 있다. 즉, 법무보험은 어떠한 문제(법률 사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소송금융은 어떠한 문제(법률 사건)가 발생한 후에도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⁴⁰⁾ 또한, 법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자가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운용할 수 있지만, 소송금융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하거나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⁴¹⁾ 왜냐하면 소송금융의 계약 형태가 ‘투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의 핵심은 성공의 불확실성, 즉 수익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수익도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금은 다양하다. 그러나, 금전대차(대여)계약의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부담하게 되며, 이자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높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⁴²⁾ 법원은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는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12208 판결). 결국 투자와 대차(대여)는 원금의 환수 가능성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에서 생산자, 매매자, 중개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⁴³⁾ 한편, 자본시장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금융투자상품이 여러 주체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다른 금융시장에

40) 이른바 소송보험(litigation insurance)을 언급할 때 ‘After The Event insurance’ 또는 ‘ATE insurance’로 지칭하기도 한다. 아테라, 2024, <<https://www.legal-security.jp>>, 검색일: 2024. 2. 23.

41)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약정금의 제공자가 금융투자업자임을 전제로 살펴 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로앤굿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및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형 로펌(law firms) 두 곳의 자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가 ① 원리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아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②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42)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대여는 적정이율보다는 높게, 이자제한법보다는 낮게 하여야 한다.

43)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상세는 김병연/권재열/양기진,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제3판, 박영사, 2017, 1쪽 이하.

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 전문가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과 6개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공통 영업행위 규칙과 개별 영업행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6개 금융투자업을 In-house 형태로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한 가능성이 확대되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37조, 제44조).

한편,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투자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⁴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4항). 소송 금융의 제공자는 그 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거래 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금융투자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64조).⁴⁵⁾ 따라서,

44) 핵심상품설명서를 포함한다.

45)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법규 실무 안내(’22.12월)”, 2023. 1. 27, <<https://fss.or.kr/fss/bbs/B0000085/>>

소송 금융을 제공한 자는 이러한 자본시장법 상의 준수사항을 유념하여 소송 금융을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2. 부동산 권원보험과의 차이점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를 보완하는 상품인데, 일정한 경우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즉,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도와주는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인 법무보험과 소송금융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품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흠결을 보완하여 완전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소송 비용도 보장하는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주로 부동산에서의 권리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무보험 및 소송금융과 일응 유사한 점이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한정하여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에 따른 소송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데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법무보험 및 소송금융과 서로 차이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부 담보대출(Mortgage Loan)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해 회사가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응소하는 서비스를 부동산 권원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록 부동산 분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법무보험 및 소송금융과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부동산 권원보험의 의의와 기능,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2.1 부동산 권원보험의 의의

미국의 부동산 법제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Deed’⁴⁶⁾라는 부동산 양도증서를 등록소에 등록(Recording)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Recording)은 대항요건(의사주의)이므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동산 법

view.do?ntId=57988&menuNo=200114>, 검색일: 2024. 2. 23.

46) ‘deed’를 날인증서로 번역하여 ‘날인증서의 등록(recording system)’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상세는 홍봉주,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토지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9, 38쪽.

제와 차이가 있다. 이는 공시방법으로서는 불완전하므로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권원조사(Title Search) 제도가 생겨났으나, 그 또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⁴⁷⁾

2.2 부동산 권원보험의 기능

미국에서 권원조사(Title Search)는 부동산 등록부에 색인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권원조사(Title Search)를 하게 된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권원조사를 통하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권리, 조사내용의 누락, 판단의 오류 등에 의해 장래 권원조사의 의뢰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그 권면액까지 무과실책임을 지는 권원보험 회사(Title Insurance Agent)가 나타났다.⁴⁹⁾

2.3 부동산 권원보험의 내용

부동산 권원보험의 내용을 구분하면 ① 증서등록제도(Recording System)에 반영된 권원의 결함에 관해서만 보증하는 것과, ② 증서등록제도에 반영된 항목 외에 기타 권원의 결함⁵⁰⁾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권원조사가 완전할수록 권원보험회사의 위험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권원보험회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권원조사이고, 권원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심사결과는 권원보험회사의 기업자산으로 축적된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부담보대출(Mortgage Loan)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해 회사가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응소하는 서비스를 권원보험에 추가함으로써 폭넓은 수요자층을 형성하고 있다.⁵¹⁾

47) 변우주, “미국의 부동산 거래와 권원보험”, 동아법학 제9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2-33쪽.

48) 板持研吾, “アメリカ不動産取引法概説”, 神戸法学雑誌 第67卷 第3号, 神戸法学会, 2017, 240頁.

49) 변우주, 앞의 논문, 41쪽.

50) 예를 들어, 부동산의 현황을 실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기록되지 않은 지역권의 존재 등.

51) 中村昌美, “アメリカ法における不動産権原保険会社の調査・賠償責任”, 法學研究 第72卷 第12号,

2.4 소결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간생략 등기가 불가피했던 사례가 있고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권원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원조사를 통하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권원보험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분야에 대한 소송 비용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외의 분야까지 포섭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건까지도 그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법무보험이나 소송금융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권원보험은 이미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권원조사(Title Search)를 통하여 그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보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법무보험이나 소송금융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에는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보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원보험은 법무보험이나 소송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권원보험을 제외한 법무보험과 소송금융의 운용 상의 제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1999, 457頁; 권원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심사결과는 권원보험회사의 기업자산으로 비축되며, 향후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된다. 이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권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과거에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점 상태가 되기도 한다. 변우주, 앞의 논문, 42-43쪽.

V. 법무보험과 소송 금융의 운용 상 제문제 및 개선 방안

1. 법무보험과 소송금융의 운용 상 제문제

1.1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회가 변호사 보수 기준표 등을 작성하여 보수를 정하거나 법무보험을 변호사회가 운영하면서 보험으로 지급할 수가를 변호사회가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 여부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⁵²⁾ 법무보험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선정하고 법무보험자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금융의 경우에도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소송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권 내지 지정권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그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무 보험자’이든 ‘소송금융의 제공자’이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여 그 비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52)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에 의하여 2000년 1월부터 변호사 보수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회사가 정한 수입료 산정기준도 위법인가가 문제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보험회사의 수입료 산정기준 역시 위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수입료 산정기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견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보험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수입료 산정기준은 변호사간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법무보험의 공익적 성격 및 변호사비용의 저가안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를 위법적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수입료 산정기준이 현실 상의 고가의 수입료를 모두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며 결국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법무보험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료산정기준”, 즉 보험금 지급기준(fee schedule)은 합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127쪽 주 39번;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사법연수원, 1999, 82쪽; 이동률,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미채택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한국법학원, 2001, 141쪽 주 36번.

1.2 소송 당사자의 역선택 문제

법무보험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법무보험은 악의의 피보험자가 역선택을 하는 문제(Adverse Selection)와 변호사가 모델 해저드를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정교한 통제가 필요하다.

소송금융의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승소할 경우에 승소금을 비롯한 막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지원금의 회수나 투자 수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그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는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는 없지만 소송에 필요한 금융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무리하게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등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인 소송금융의 제공자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지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투자수익을 확보하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악의의 소송 당사자가 소송금융을 역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금융을 제공한 자가 부당하게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도 정교한 통제가 필요하다.

1.3 면책 사유의 존부

과거 우리나라에서 법무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던 독일 다스(D.A.S)사의 법무보험 상품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사기 혹은 불법 행위, 전쟁,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 방사능 오염,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 이혼 또는 민법·친족법과 관련된 법적 다툼 등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다.⁵³⁾ 한편, 법무보험의 지급 한도에 대하여 법무보험의 보험약관은

53) 권효상, 앞의 논문, 88쪽.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비용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⁵⁴⁾ 이러한 점에서 법무보험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면책 사유의 내용과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송금융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면책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로앤굿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점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미리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소송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개별 약정이나 약관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스닥은 인공지능이 고객의 사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승소사례 또는 판례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이 의뢰인이 가져온 사건의 승소율을 계산하여 대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 금융을 제공하는 자는 잘못된 정보를 고지한 소송 당사자로 인하여 승소율을 잘못 계산한 결과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였음에도 그 귀책사유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도록 면책 사유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고지한 의뢰인에게 애초에 지원금을 잘못 지원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승소율의 계산과 실제 승소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이 소송 금융의 투자 수익과도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잘못된 정보를 고지한 책임을 정보의 경중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물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의뢰인이 고지하는 정보의 경중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소송 금융을 제공하는 자는 의뢰인이 고지하여야 할 정보의 경중에 대한 기준과 면책 사유 및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54) 더퍼블릭, 신한나, “변호사비용 지출 시 보험의 지급 한도 확인해야...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2023. 8. 17,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64>>, 검색일: 2024. 2. 24.

55) 원고와 피고 구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패소 시 착수금 지급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고 의뢰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사건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이 신청 가능한데, 형사범죄 가해자 사건(의뢰인이 피의자,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2. 법무보험과 소송금융의 운용 상 개선 사항

우리나라는 금융이 보험, 증권, 은행으로 세분화되어 규제되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도 나뉘어져 있다. 비록 최근에는 서로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종전에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어떻게 금융상품의 계약에 편입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한 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소송금융에 관한 상품이 실제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대다수 중산층 국민의 소송 부담의 경감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규제 중심의 금융 산업보다는 이를 개선하여 이제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의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된다. 결국,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리 회사의 형태로서 운용하는 방식을 우리 법체계에 서도 도입하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리 회사의 영업 행위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에 변호사비용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여야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소송 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법무보험을 전업으로 하던 외국 보험사가 철수하였고, 국내 보험사는 교통사고 건 등의 특정 분야의 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데 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 대다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송 금융은 국민 대다수인 중간소득층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이 대다수 중산층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종전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약관법의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도 없앨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금융소비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여 국민이 권리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리 회사의 형태로서 운용하는 방식을 우리 법체계에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리 회사의 영업 행위가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연/권재열/양기진,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제3판, 박영사, 2017.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사법연수원, 1999.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콘라드헷세, 계획열 옮김, 통일독일헌법원론 제20판, 박영사, 2001.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 C.F. Müller, 1993.

2. 학술지

- 변우주, “미국의 부동산 거래와 권원보험”, 동아법학 제9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1-53쪽.
이동률,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미채택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한국법학원, 2001, 129-149쪽.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105-132쪽.
최병규, “인공지능(AI) 활용 리스크에 대한 보험법의 대응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103-126쪽.
홍봉주,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토지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9, 31-54쪽.
板持研吾, “アメリカ不動産取引法概説”, 神戸法学雑誌 第67巻 第3号, 神戸法学会, 2017, 203-253頁.
中村昌美, “アメリカ法における不動産権原保険会社の調査・賠償責任”, 法學研究 第72巻 第12号, 慶應義塾大学法学会, 1999, 437-464頁

3. 학위논문

-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보고서

안수현,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1-05, 보험연구원, 2021, 1-114쪽.

5. 기타 자료

경향신문, 유희곤, “독일 법률비용보험사, ‘아시아 최초’ 한국 진출 12년 만에 철수”, 2021. 11. 10,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1101641011#c2b>>, 검색일: 2024. 2. 2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22.12월)”, 2023. 1. 27, <<https://fss.or.kr/fss/bbs/B0000085/view.do?nttId=57988&menuNo=200114>>, 검색일: 2024. 2. 23.

더퍼블릭, 신한나, “변호사 비용 지출 시 보험의 지급 한도 확인해야....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2023. 8. 17,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64>>, 검색일: 2024. 2. 24.

법률신문, 홍수정, ““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85>>, 검색일: 2024. 2. 23.

법률신문, 홍수정, “‘소송금융’ 본격화, 법조 새 시장 열리나”, 2024. 2.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6074>>, 검색일: 2024. 2. 23.

アテラ, 2024, <<https://www.legal-security.jp>>, 검색일: 2024. 2. 23.

Algorithm-X Lab, KC Cheung, “First Canadian Life Insurer to Underwrite Using AI”, <<https://algorithmxlab.com/blog/first-canadian-life-insurer-to-underwrite-using-artificial-intelligence-2/>>, 검색일: 2024. 2. 24.

Law&Good, litigation finance brochure, 2024, <<https://www.lawandgood.com>>, 검색일: 2024. 2. 23.

ROLAND Rechtsschutz-Versicherungs-AG, “Informationen für Verbraucher:innen und Geschäftskunden zu den Rechtsschutz-Bedingungen ARB 2024”, <https://www.roland-rechtsschutz.de/media/roland-rechtsschutz/pdf-rr/033-rechtsschutzbedingungen/arb_2024.pdf>, 검색일: 2024. 2. 24.

Allstate, 2024, <<https://www.allstate.com>>, 검색일: 2024. 2. 23.

augustaventures, 2024, <<https://www.augustaventures.com>>, 검색일: 2024. 2. 23.

burfordcapital, 2024, <<https://www.burfordcapital.com>>, 검색일: 2024. 2. 23.

Cape Analytics, 2024, <<https://capeanalytics.com>>, 검색일: 2024. 2. 23.

harbourlitigationfunding, 2024, <<https://www.harbourlitigationfunding.com>>, 검색일: 2024. 2. 23.

Lapetus, 2024, <<https://lapetussolutions.com/insurance-reinsurance>>, 검색일: 2024. 2. 23.

lawsdaq, 2024, <<https://lawsdaq.com>>, 검색일: 2024. 2. 23.

Lemonade, 2024, <<https://www.lemonade.com>>, 검색일: 2024. 2. 23.

Manulife, 2024, <<https://www.manulife.com>>, 검색일: 2024. 2. 23.

omnibridgeway, 2024, <<https://omnibridgeway.com>>, 검색일: 2024. 2. 23.

[Abstract]

A Study on Legal Finance for Costs of Legal Action

– Focusing on the Assignment of Risks to the Imperfe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ed by Insurers and the Comparison with Legal Insurance or Title Insurance that Guarantees Legal Costs as well as Legal Finance –

Kwon, Hyo Sang*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the number of lawyers has increased. However, a large amount of money still has to be paid to appoint lawyers. Still, due to the burden of legal costs, the majority of Koreans are not guaranteed their rights by law when they face unfair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middle class is not rich in funds, so they are burdened with legal costs. In these respects, the burden on legal costs must be reduc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urt proceedings. In this reality, legal finance can be an alternative to reducing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Recently, products that provide such legal costs by financial companies have emerged. The produc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dict the winning rate and support legal costs. Such legal financing has already spread widely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Burford is one of Legal Finance Corporation. Since opening in 2009, Burford has grown to a team of over 160 located in eight offices in the US, Europe, Asia,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With public listings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nd London Stock Exchange, Burford is the world's largest provider of commercial legal finance and have worked with hundreds of leading law firms and businesses.

Meanwhile, harbourlitigationfunding is another of Legal Finance Corporation. When harbourlitigationfunding funds individuals or corporate claimants, harbourlitigationfunding

* Ph.D., Insurance Broker, Lecturer, Korea University

can pay all the legal fees and disbursements over the lifetime of the claim. In exchange, when the claim succeeds and damages are awarded, harbourlitigationfunding receives a pre-agreed share of the amount recovered. If the claim does not succeed, our funding is written off, and the loss is harbourlitigationfunding's alone. Harbourlitigationfunding can also shield clients from the risk of adverse costs. After the Event insurance cover can be purchased to manage adverse costs, own-side costs, and own-side disbursements. Funding for law firms is also available allowing them to mitigate the risk of offering contingent fees or working capital facilities to expand their practices and develop new workstream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such legal finance and derive its implications.

[Key Words] Legal Finance, Legal Expense, legal costs, artificial intelligence, winning rate, legal insurance